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2. 8. 11 선고 2021가단20837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메리트

담당변호사 조현수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신민경

피 고 주식회사 B

변 론 종 결 2022. 7. 21.

판 결 선 고 2022. 8. 11.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1. 피고와 주식회사 C 사이에 경기도 양평군 D 전 537㎡에 관하여 2020. 6. 26.자 매매예약은 이를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63,510,0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카합34259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여 C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이 금 14,654,108원임을 확정한다는 인용결정을 받았고, 그 인용결정은 2018. 11. 7. C에게 송달되어 같은 달 11. 확정되었다. 원고는 또 C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나63104 부당이득금 소송을 하여 C이 원고에게 34,992,287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14.부터 2020. 7.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일부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의 C의 상고에도 불구하고 2020. 7. 9. 확정되었다.

나. C은 그 소유의 경기도 양평군 D 전 53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20. 6. 26.자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하여 같은 날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이후 C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21. 12. 3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22. 1. 10.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이 사건 가등기는 2022. 2. 24. 해제를 원인으로 2022. 3. 2. 말소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C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가 이 사건 가등기를 양도하여 더 이상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므로 가액배상으로 원고의 채권액에 상당하는 63,510,050원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채권자취소권은 사해행위로 이루어진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하기

위한 권리로서 사해행위에 의해 일탈된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총채권자를 위하여 채무자에게 복귀시키기 위한 것이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특정 채권자에게만 독점적 만족을 주기 위한 권리가 아니므로,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에 관한 사해행위를 이유로 수익자를 상대로 그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계속 중 위 사해행위가 해제 또는 해지되고 채권자가 그 사해행위의 취소에 의해 복귀를 구하는 재산이 벌써 채무자에게 복귀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권자취소소송은 이미 그 목적이 실현되어 더 이상 그 소에 의해 확보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지는 것이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다19558 판결 참조).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원상회복을 구하는 이 사건 가등기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이던 2022. 2. 24. 해제되어 2022. 3. 2. 말소됨으로써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의 목적을 달성되었으므로 더 이상 이 사건 소에 의하여 확보할 권리보호이익이 없게 되었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가등기를 제3자(E)에 양도하여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예약을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구할 실익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답변서에서 이 사건 가등기를 제3자(E)에게 양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기는 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E은 이 사건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 및 본등기를 한 것이 아니라 C과 사이에 별도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이후 이 사건 가등기는 해제로 말소되었는바, 이 경우 가등기의 원인행위인 이 사건 매매예약과 위 별도의 매매계약이 동일하다는 입증이 없는 이상, 위 별도의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는 위 별도의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로 주장하여 취소를 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미 말소된 이 사건 가등기의 원인행위인 이 사건 매매예약을 취소할 권리보호이익은 없다. 결국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판사 임대호